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원고(국내 전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 약 3천억 원과 별도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약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전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의 외관을 만들어 내어 위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sup>1)</sup>

## 1. 사안의 개요

- ▣ 원고와 캐나다 소재 N사는 쟁점 투자계약, 쟁점 출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소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소외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sup>2)</sup>의 대가를 수수하였음
- ▣ 한편 원고와 N사는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개로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

1) 이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심리하게 될 **취소대상 세액은 6,772,871,796원**임

※ 6,772,871,796원 =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07,701,523원(가산세 포함) 중 1,569,266,1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3,238,435,366원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3,980,594,803원 중 1,659,644,803원을 초과하는 2,320,950,000원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132,883,811원 중 919,397,381원을 초과하는 1,213,486,430원

2)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관하여는 소외 법인 보통주 999,999주와 우선주 4주,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자산에 관하여는 미화 1억 4,500만 달러,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

하고, 이에 따라 소외 법인은 2007 및 2008년에 원고 보유 우선주 1주의 유상감자 및 N사에 대한 우선주 1주씩의 신주발행 절차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N사로부터 지급받은 신주 납입대금을 원고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양도대금 이외에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7,400만 원(= 2007년 272억 9,400만 원 + 2008년 524억 8,000만 원).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음**

'쟁점 우선주 약정'의 주된 내용: 소위 Earn-out 방식<sup>3)</sup>에 따라 거래 이후 2년 동안 소외 법인의 내수매출액이 4,800억 원~6,0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할 경우 원고에게 적정 환매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주 2주를 소각하는 내용

- 감자(자본금의 감소): 법적 절차에 따라 자본금의 금액을 축소시키는 것
  - 유상감자: 자본금 감소와 함께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순자산도 같이 감소시키는 것
  - 무상감자: 순자산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자본금만 줄이는 것
- 원고는 쟁점 금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sup>4)</sup>을 적용하여 쟁점 금원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였음
-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은 법인 단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그 소득금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될 때에 다시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법인주주의 경우)'를 과세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 (= 배당소득에 대한 누적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당소득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피고는 쟁점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가산**

3) 어떤 회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약. '벌어서 나누는 방식'

4)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 포함)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 승

-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만 쟁점 우선주약정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금원의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심: 원고 패

-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쟁점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쟁점 금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금원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쟁점 금원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사후 정산 조항에 따라 사업양도 이후 양도대금 일부를 소외 법인에 반환하였음. 반면 쟁점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었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쟁점 투자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N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N사는 자회사인 소외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음. N사로서는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고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양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었음
  - 실제 소외 법인은 2006, 2007년 국내 매출액이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인 4,800억 원을 각각 초과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음

- 원고가 대가로 지급받은 소외 법인 주식 등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은 S회계법인의 영업자산 가치평가액 2,881억 5,600만 원 및 해당 영업자산의 장부가액 2,758억 9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임
- 소외 법인은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갖추어 우선주를 유상감자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N사가 납입한 우선주 주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에게 배당이 금지되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소외 법인 내에 적립하였음. 즉, 쟁점 금원과 위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음

#### 4. 판결의 의의

- 종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음(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개별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음